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40호 2020. 5. 18.(월)

공 고

- 목포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
-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4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공고 제 2020 - 800호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8.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수련원 이용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련비용을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립 및 인근 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수련비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인상 조정
 - 제13조(수련비용의 징수)① 수련비용 중 수련원사용료 또는 임차료는 별표1과 같이 징수하고, 식대, 프로그램운영비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1] 1.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단위:원)

구 분	시설사용료(1박)		인상금액
	현재	인상(안)	
초등학생 이 하	4,000	7,000	3,000
중 학 생 이 하	4,500	7,500	3,000
고등학생	5,000	8,000	3,000
대 학 생 (24세이하 청소년포함)	5,000	8,000	3,000
일 반 인	6,000	10,000	4,000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조표 : 별첨

5. 관련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6. 관련부서 의견

○ 규제대상(법무혁신담당)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 2020. 5. 18 ~ 6. 8(21일간)

9. 사전협의 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8일까지 목포시장(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여성가족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68),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여성가족과(☎ 061-270-8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수련비용의 징수) 제1항 중 “수련비용 중 수련원사용료”를 “별표1과” 같이 한다.

[별표1] 1.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단위:원)

구 분	초등학생이하	중학생이하	고등학생	대 학 생 (24세이하청소년포함)	일반인	비 고
금 액	7,000	7,500	8,000	8,000	10,000	

※ 숙박비, 수련시설, 야영장, 냉·난방비 포함 금액임(1인 1일 기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1. 청소년 수련원 시설 사용료 (단위:원)							[별표1] 1. 청소년 수련원 시설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초등 학생 이하	중학생 이하	고등 학생	대학생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일 반	비 고	구 분	초등 학생 이하	중학생 이하	고등 학생	대학생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일 반	비 고
금액	4,000	4,500	5,000	5,000	6,000		금액	7,000	7,500	8,000	8,000	10,000	

[관련 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 2020 - 802호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1. 개정 이유

-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3조(구성) 개정 :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
- 제5조(위원의 위촉) 개정 : 상위법 조항 삭제로 인한 개정 및 추가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조표 : 별첨

5.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6. 관련부서 의견

- 규제대상(법무혁신담당)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 2020. 5. 18. ~ 6. 7.(21일간)

9. 사전협의 사항

- 해당없음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업무를**” 을 “**업무를 3년 이상**” 으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② (생략)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
1. <u>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u>	<삭 제>
2. <u>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 관서에서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u>	1. ----- ----- ----- <u>업무를 3년 이상</u> -----
<신 설>	4. <u>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u>
3.·4. (생략)	2.·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u>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u>	3. <u>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삭제 <2017. 10. 24.>

목포시 공고 제2020 - 803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8.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2019. 7. 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 또한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을 개편, 불합리한 용어 정리를 통해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티투어 탑승료 감면 대상인 “장애1급~장애3급”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여성가족과-18424(2020.4.29.) : 2020A전남목포024

8.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9. 입법예고 : 2020. 5. 18. ~ 6. 8. (21일간)****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관광과)]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관광과(☎ 061-270-8431, FAX 270-8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5조(탑승료 면제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탑승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생 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의 경우는 보조자 1인 추가 감면) 3. ~ 5. (생 략)	제5조(탑승료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 3. ~ 5.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